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및 범위 확대 등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16호)

2026. 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및 범위 확대 등	4
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통지 및 지원연계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1. 13.
3. 회 부 일 : 2026. 1. 14.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향이 부족하고 협박과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본인이 완전한 자발적 의사로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종종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2024년도부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아청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현재 아청센터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그루밍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의료, 사건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명칭과 지원대상 범위가 아직 법률에 명확히 반영되지 못하여 수사기관 등 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들이 보호·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성착취물, 그루밍 등의 피해아동·청소년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보호·지원하며, 그 밖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강화와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하고, 그 범위에 성착취물 제작·배포, 그루밍 등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도 포함함(안 제2조, 제38조, 제45조, 제46조).

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범죄로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함(안 제47조의2, 제56조 및 제57조).

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38조).

IV. 검토의견

1.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및 범위 확대 등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며, 이에 맞추어 보호시설·상담시설의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제38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2, 제56조, 제5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6의2. “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 ”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 9. (생략)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생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성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u>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제15조의2</u> ----- -----. 7. ~ 9. (현행과 같음) 제38조(<u>성착취</u>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성착</u>

현행	개정안
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통지하여야 하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해당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제47조의2에 따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 1. (현행과 같음) 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제45조(보호시설) -----

현행	개정안
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략)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략)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u>아동·청소년 성매매</u>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② (생략)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3.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제46조(상담시설)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3. -----<u>아동·청소년 성착취</u>-----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2(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 -----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 -----.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1.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 ----- -----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 ----- ----- -----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 -----

현행	개정안
5.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u>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u>아동·청소년 성매매</u> 등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u><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	5.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6. <u>아동·청소년 성착취</u>----- ----- 7.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③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④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 -----. ⑤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현행	개정안
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략) 9의2. <u>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10. ~ 26. (생략)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	----- ----- -----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10. ~ 26.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

현행	개정안
인) ①·② (생략)	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 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 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 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 관 및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5의2. ----- -----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6. ~ 17. (생략)	6. ~ 17.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피해아동·청소년¹⁾ 중 제13조제1항²⁾의 죄의 상대방 또는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³⁾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제38조),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제45조 및 제46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제47조의2) 등의 조항에서 이들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학교, 가족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고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출 후 숙식을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폭행 경험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매매에 연루되는 등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⁵⁾ 이처럼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조주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080호, 2015.11.4. 참조.

5) 이유진,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참조.

에서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 5.19.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2020.11.20. 시행)하였으나,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낙인은 아직 존재하고 있음. 성매매라는 용어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과 아동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는 죄에 성착취물제작·배포죄(제11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제15조의2)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수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오프라인에 한정하는 관점이 반영된 결과⁶⁾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다양화 및 가파른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의 보호 및 병원과의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 범위에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⁷⁾의 죄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6) 김홍미리,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22~23쪽 참조.

개정안은 성매매 유입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지침(2019)’을 통해 아동성매매 대신 ‘성매매를 통한 아동성착취(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prostitution)’로 기술할 것을 권고하였는바⁸⁾, 아동성매매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유형별 현황 】

['19. 1. 1. ~ '24. 6.30., 건수(중복)]

구분	계	유포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진합성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19	4,114	1,213	1,043	354	557	144	273	530
2020	6,983	1,586	2,239	967	1,050	349	306	486
2021	10,353	2,103	2,228	1,939	2,660	176	533	714
2022	12,727	2,481	2,684	2,284	3,836	212	534	696
2023	14,565	2,717	2,927	2,664	4,566	423	500	768
2024.6.	11,838	2,155	3,306	1,725	3,009	726	193	724

자료: 디성센터(성평등가족부, “여가위 주요현안보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 2024.9.4. 1쪽 재인용)

다음, 개정안 제47조의2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업무의 범위도 대상의 변경에 맞추어 확대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법 제47조의29)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인바,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봄.

또한, 개정안 제47조의2제3항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8) 김홍미리,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21쪽.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있는데, 성매매, 성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종사자 자격기준 및 수 관련 유사 입법례 】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⑤상담소의 설치기준·신고절차·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④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②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⑤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③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그루밍,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통지 및 지원연계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속한 지원센터 상담·보호 또는 지원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생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u>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u>통지하여야 한다</u> .	제38조(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u> -----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 ----- ----- <u>통지하여야 하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해당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제47조의2에 따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통지 시점을 변경하여 ‘사건을 수사한 후’가 아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해당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상담·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지원체계의 가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해당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신속한 증거 확보나 성착취물의 삭제·차단 등을 위하여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수사기관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시점을 ‘수사 종결 이후’가 아닌 ‘수사 전 또는 수사 진행 중’ 시점으로 앞당겨 피해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보호·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사기관에 조사 전 상담 등 지원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조사 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조치 의무 규정은 피해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이익에 반할 우려¹⁰⁾가 있어 필요하다면 단서 또는 예외규정을 병행하여 신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10) 경찰청은 △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성착취물 삭제·차단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 △ 피해아동·청소년이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 여러 번 출석하는 경우 △ 피해아동·청소년이 연락 두절되어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로 예상하고 있음.